광주 동물보호소 유기동물 절반 안락사 되나

광주시, 개정 동물보호법 지키기 위해 내달 두수 제한 TF팀 가동

관리 포화에 안락사 방침…동물보호단체는 "예산 늘려 보호해야"

지난 16일 찾은 광주시 북구 본촌동 광주동물보호소에 입양되지 못한 유기견들이 갇혀있다.

주인에게 버려져 광주동물보호소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 절반 가량이 다음달 안락사를 당할 위기에 처해졌다.

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취지로 지난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규칙을 지키기 위해 광주시가 다음달부터 직접 안락사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광주동물보호소 두수제한 TF팀'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광주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4월 31년만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무등록 반려동물 업체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늘렸다.

특히 적절한 동물 두수를 두기 위한 조치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동물보호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따라 직원 한명 당 20마리만 돌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광주동물보호소의 동물 절반 가량이 안락사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실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거나 입양을 돕는 역할을 한다. 광주동물보호소는 지난 2011년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개소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원들은 총 12명으로 견사와 묘사를 관리하는 인원 8명과 2명의 진료 인원, 2명의 행정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행규칙에 따라 광주동물보호소에는 총 240여마리의 유기동물만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광주 동물보호소에는 지난달 기준 총 574마리가 있다. 직원 1명당 평균 40마리를 케어하고 있는 꼴이다.

입양은 줄고 있지만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은 탓에 2021년 434마리를 보호하다 2022년 554마리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더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들개 관리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거리에 떠도는 유기견들 대다수가 보호소로 들어오는 탓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산이 정해져 있어 직원을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광주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지키기 위해 직원을 늘릴 수 없으니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광주시는 동물보호단체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보니 안락사보다는 동물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보호된 유기동물은 10일간의 입양공고가 끝나면, 안락사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광주동물보호소는 최소한의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동물보호소의 최근 5년(2017년~2021년) 연평균 안락사 비율은 보호개체 수 대비 22.5%인데 반해 광주시 동물보호소의 안락사 비율은 9.4%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광주동물보호단체들은 광주시가 동물보호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대전시가 직영하고 있는 대전동물보호소는 광주보다 한해 유실동물이 1100여마리 이상 적지만 직원은 두배 이상(25명) 많다는 점에서다. 또 한해 예산은 16억원으로 광주시 예산의 2배가 넘는다는 주장이다.

김은샘 광주동물보호소장은 "광주동물보호소는 같은 규모의 대전시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동물을 더 적은 인원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선거철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 동물친화적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막상 예산은 늘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생명농업과 관계자는 "예산을 늘려 직원을 고용하는 방법보다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두수를 맞추는 게 우선적이라고 본다"며 "내년 4월 새 축사가 완공되면 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한방병원 투자명목 수억 받아 생활비 탕진 한의사 징역 3년

광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 여러 차례 폐업을 한 50대 한의사가 한방병원 투자명목으로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겨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께 피해자에게 이력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1억원을 투자하라고 요청해 2019년 4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총 7억 34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방병원을 차리면 매월 1억 19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000만원씩을 20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제를 못하더라도 공정증서로 건강보험청구액과 병원카드 매출액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속이기까지 했다.

한의사인 A씨는 2007년부터 4차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했지만, 적자 등을 이유로 폐업을 해왔다. A씨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기 전부터 이미 상당한 부채로 개원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휴대전화 요금, 마트 이용 등 주로 생활비로 지출해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면 "피해 일부만 변제한 점, 합의를 하지 못한 점, 과거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야간 도로공사 현장 차 몰고 간 속셈은?

고의 교통사고 내고 "조명 등 안전 조치 미흡" 협박 보험금 챙겨

방송에 제보 출연 인터뷰까지 광주경찰청, 일당 8명 붙잡아

야간에 전남지역의 도로공사 구간만을 찾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50대 A씨와 공범 7명 등 총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구속됐고, A씨의 배우자를 포함한 공범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담양·나주·화순·장성 등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5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억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남지역에서 진행중인 도로공사 현장에 조명시설이 부족해 사고가 나면 공사 현장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험사기 범행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사고를 낸 후 "도로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제보해 실제 환자복을 입은채 방송에까지 출연해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로공사 현장에서만 A씨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공사 발주처 관계자가 경찰에 제보를 해 꼬리가 잡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중분양 사기 지산주택조합 실질적 운영자 시행사 자금 3억 빼돌려 징역 1년 추가 선고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시행사 자금 3억원을 빼돌려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평호)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산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질적 운영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같이 기소된 대행사 사내이사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사업부지인 일부 토지를 시행사 자금으로 매수한 다음 B씨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분양이 완료돼 분양할 세대가 없음에도 '부적격세대나 임의세대로 조합원에 가입시킬 수 있다'고 속이고 분양서류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같은 사건에 대해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및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구속상태였는데 이번 재판으로 1년의 징역을 더 살게 됐다.

A씨는 토지대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령한 것은 선집행 된 행정용역비를 보전하기 위함이었을 뿐 횡령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선집행에 따른 자료가 전혀 없고 3억원을 지급 받은 후 임의 소비했다는 점에서 횡령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완도 양식장 정화조 작업하다 무더위에 산소 부족 7명 질식

완도의 한 양식장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직원들이 최근 급격하게 더워진 날씨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완도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께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의 양식장 내 정화처리시설에서 작업자 7명이 단체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작업자들은 한국인 3명과 동티모르인 4명으로 구성됐으며, 당시 33㎡(10평) 규모의 정화처리시설에 들어가 찌꺼기(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설은 양식장에 쓸 바닷물을 끌어와 침전시킨 뒤 내보내는 침수조다.

조사 결과 시설 내에서 유독성 가스나 포르말린 등 화학물질을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높아지자 슬러지 내 미생물이 빠르게 번식해 부패했고, 이 과정에서 산소를 많이 소모하면서 작업자들이 질식하게 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고 정황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